# 2 대학언론사 규정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) ① 호서대학교 내에 대학언론사를 두며, 대학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는 "호서대학신문"이라 칭하고, 대학언론사가 운영하는 방송국은 호서대학교 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.
  - ② 호서대학교 방송국의 영자 표기는 H.S.B.S(Hoseo University Broadcasting Station)로 표기 한다.
- 제2조 (목적) 대학언론사는 본교 학칙에 따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,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여 학내의 여론을 창달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3조 (중립과 독립의 원칙)** 대학언론사는 정치적, 상업적 제요소를 배제하고 사업 및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한다.
- 제4조 (사업) 대학언론사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.
  - 1. 호서대학신문 발간
  - 2. 방송국 운영
  - 3. 대내·외 홍보 및 각종 홍보물의 발간
  - 4. 행사 사진촬영 보관
  - 5. 기타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기구와 조직

- **제5조 (사장)** 사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학언론사를 대표하며, 제5조의 사업 에 관한 전체업무를 통괄한다.
- **제6조 (편집인)**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은 본 대학 학생처장이 하며 신문편집에 대한 업무를 통괄하다.
- 제7조 (주간교수) ①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  - ②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신문의 편집,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간사 및 학생기자를 지휘 감독한다.
  - ③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, 제작 및 운영하는 간사 및 국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제8조 (간사) ① 대학언론사의 간사는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 간사는 사장,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인 및 주간교수를 보좌하고 사업관리 그리고 경리 및 행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.
- 제9조 (언론자문위원회) 대학언론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위촉하는 언론 자문위원회를 구성, 자문에 응할 수 있다.
- **제10조 (편집장)**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장은 학생기자를 대표하고 주간교수의 지휘 하에 신문발 가의 모든 실무를 수행하는 학생기자의 활동을 감독한다.
- 제11조 (편집회의)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한다.
- 제12조 (편집회의 구성) 편집회의는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- 1. 주간교수
  - 2. 감 사
  - 3. 편 집 장
  - 4. 학생기자
- 제13조 (실무국장) 방송국의 실무국장은 방송국의 국원을 대표하고 주간교수의 지휘 하에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과 제작 및 운영하는 국원의 활동을 감독한다.
- **제14조 (부서)** 방송국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부, 보도부, 아나운서부, 기술부 등을 둔다.
- 제15조 (부장) 각 부장은 4학기를 수료한 국원 중에서 선발하되 실무국장의 제청에 주간교수가 임명한다.
- 제16조 (분장) 각 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.
  - 1. 편성부 : 편성부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.
  - 2. 보도부 : 보도부는 뉴스취재 및 이에 따른 제반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.
  - 3. 아나운서부 : 아나운서부는 뉴스프로그램 및 아나운서가 담당해야할 프로그램을 담당하다.
  - 4. 기술부 : 기술부는 방송의 기술운행 및 이에 따른 기재관리와 정비를 담당한다.

#### 제 3 장 학생기자

- 제17조 (부서) 학생 편집장 밑에 기획부, 편집부, 취재부 등을 두며, 각 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기획부 : 특집계획 등 일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재정 및 광고업무를 담당한다.
  - 2. 편집부 : 신문의 편집 및 편집을 위한 자료의 정리,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3. 취재부 : 학내·외 기사의 취재를 담당한다.
- 제18조 (분장) ① 학생편집장은 주간의 지도하에 신문의 편집,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완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.
  - ② 학생기자는 주간의 지도를 받아 기사를 취재하고 신문을 편집한다.

- 제19조 (임명) 학생기자의 임명과 해임은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
- 제20조 (자격) 학생기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품행이 방정하고 언행이 건실한 모범생이어야 한다.
  - 2.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  - 3. 학생회 서클에 가입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.
- 제21조 (장계) 학생기자로서 학칙과 사규를 위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학언론사의 지휘계통에 불복, 권위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그 직을 해 임한다.

### 제 4 장 국 원

- 제22조 (국원의 자격) 방송국의 국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소정의 선발과정 및 수습기간을 거친 뒤 실무국장의 추천으로 주간교수가 임명한다.
- 제23조 (국워의 종류) 방송국의 국원에는 정국원, 수습국원 및 명예국원으로 한다.
  - 1. 정국원은 1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주간교수가 임명한다.
  - 2. 수습국원은 본교 1학년 재학생으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.
  - 3. 명예국원은 본 방송국 동문과 본 방송국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.
- 제24조 (자격상실) 본 방송국 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- 1. 학칙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
  - 2.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2.8에 미달하는 경우와 학생회 및 써클에 가입한 때
  - 3. 입대하거나 휴학한 때

#### 제 5 장 재 정

- 제25조 (재정) 대학언론사는 교비로 운영하며, 학교보조금, 신문 광고료 및 기타수익사업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한다.
- 제26조 (예산 및 결산) 대학언론사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재무회계지침에 따른다.
- 제27조 (수당) 주간교수, 간사, 학생기자, 국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8조 (회계연도) 대학언론사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②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